####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60

발의연월일: 2024. 8. 30.

발 의 자:서영교·김문수·박 정

이기헌 · 염태영 · 박홍근

박정현 · 오세희 · 김남근

이용선 · 김남희 · 박주민

이원택 · 황정아 · 한정애

이수진 의원(16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3개 법률을 일괄하

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제1조(「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조(「공증인법」의 개정) 공증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개정) 국민의 형사재 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4조(「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5조(「민법」의 개정)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7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098조 중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를 "제한능력자"로 한다.

제6조(「법무사법」의 개정) 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를 삭제한다.

- 제7조(「변호사법」의 개정)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9호를 삭제한다.
- 제8조(「비송사건절차법」의 개정) 비송사건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5호를 삭제한다.

- 제9조(「상법」의 개정)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2조의8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 제10조(「신탁법」의 개정) 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은 자"를 "한정치산자"로 한다.
- 제11조(「외국법자문사법」의 개정) 외국법자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이 취급되는 사람
- 제12조(「정부법무공단법」의 개정) 정부법무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3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임원 등) ① ~ ⑤ (생	제5조(임원 등) ① ~ ⑤ (현행과	
략)	같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6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		
원이 될 수 없다.		
1. • 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	<u>&lt;</u> 삭 제>	
권되지 아니한 자		
4. • 5. (생략)	4. • 5. (현행과 같음)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공증인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임명공증인의 결격사유)	제13조(임명공증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은 임명공증인이	
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	<u>&lt;삭 제&gt;</u>
되지 아니한 사람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제17조(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lt;삭 제&gt;</u>
아니한 사람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재산관리인의 결격사유)	제16조(재산관리인의 결격사유)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	
는 사람은 남한주민으로서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	
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회생절차개시결정, 간이회생	<u>&lt;삭 제&gt;</u>
절차개시결정,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u>받은 사람</u>	
3. • 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민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	<u>&lt;삭 제&gt;</u>
선고를 받은 자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제1098조(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제1098조(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제한능력자
<u>자</u> 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	
다.	

법무사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	제6조(결격사유)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	
사가 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	<u>&lt;삭 제&gt;</u>
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변호사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lt;</u> 삭 제>	
아니한 자		
10. (생략)	10. (현행과 같음)	

## 비송사건절차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1조(청산인의 결격사유) 다음	제121조(청산인의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없	
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파산선고를 받은 자	<u>&lt;삭 제&gt;</u>

상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①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제3	2
82조제3항 각 호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lt;삭 제&gt;</u>
아니한 자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탁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수탁능력) 미성년자, 금치	제11조(수탁능력)
산자, 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	<u>한정치산자</u>
<u>를 받은 자</u> 는 수탁자가 될 수	
없다.	<b>.</b>

# 외국법자문사법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	제5조(결격사유)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	
국법자문사가 될 수 없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6.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	및 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되지 아니한 사람 및 원자격	이와 같이 취급되는 사람
국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이	
취급되는 사람	

## 정부법무공단법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u>&lt;삭 제&gt;</u>
<u>자</u>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16조(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4		
해당하는 자는 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u>견인</u>		
<u>복권되지 아니한 자</u>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